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7
----------	-----

2017. 12. 22(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2월 14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함.

나. 주요내용

-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안 제24조)
-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안 제30조)
-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조항 및 전수교육 조항 삭제 (안 제41조 ~ 제44조)
-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조항 삭제 (안 제5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호)

- 위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향후 근대문화유산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 관리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60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11월 2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7

제출연월일 : 2017년 11월 2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안 제24조)
-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중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 (안 제30조)
-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조항 및 전수교육 조항 삭제 (안 제41조 ~ 제44조)
-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가·예능 공개 조항 삭제 (안 제5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중 “현상변경 또는 도의 반출 허가”를 “현상변경 허가”로 한다.

제2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목 중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를 “지정 고시”로 하고, 제1항 중 “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제목 중 “지정서 또는 인정서의”를 “지정서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되어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제목 중 “지정 또는 인정의”를 “지정의”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 중 “소유자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를 “소유자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해제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제40조 중 “소유자·보유자·관리자”를 “소유자, 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소유자, 보유자”를 각각 “소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유자, 보유자”를 “소유자”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1조제3항 중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를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로 한다.

제52조 중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을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항에 따른 기능과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삭 제>
제27조(<u>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u>) ①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u> ② (생략)	제27조(<u>지정 고시 및 통지</u>) ① ----- ----- ----- <u>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u>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u>) ① (생략) ②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28조(<u>지정서 교부</u>)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29조(<u>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u>)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나 인정의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u>지정의 효력발생 시기</u>)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u>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u>) ① (생략) ②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도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에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0조(<u>지정의 해제</u>)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6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8. 삭제 <2012. 7. 16>

③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나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른다.

⑥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

③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해제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른다.

⑥ -----
-- 소유자가 -----

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u>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⑦ (생략)	----- ----- ----- ---- ⑦ (생략)
제40조(신고 사항)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소유자·보유자·관리자</u>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소유자, 보유자</u>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 9. (생략)	제40조(신고 사항) ----- ----- ----- <u>소유자, 관리자</u>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소유자</u> ----- ----- -- 4. ~ 9. (현행과 같음)
제4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삭제>

②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보유한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 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공유재산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전수 교육)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	<u><삭 제></u>

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 이수증의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이나 예능심사 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조교는 제42조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삭 제></u>
제44조(전수 장학생) ①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u><삭 제></u>

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명령) ① (생략) 1.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u>소유자</u>, <u>보유자</u>,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제45조(행정명령) ① (현행과 같음) 1. ----- ----- ----- ----- <u>소유자</u> ----- -----

2. (생략) 3.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u>소유자, 보유자, 관리자</u>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생략) ② ~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3. ----- ----- <u>소유자</u> ----- -----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보조금) ① (생략) 1. ~ 3. (생략)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생략) ② (생략) ③ <u>제1항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u>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u>에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50조(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2호, 제3호 내지 제5호까지의</u> ----- ----- ----- ----- ----- <u>소유자</u> ----- ----- ----- ④ <u>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u>
제51조(손실의 보상) ① ~ ② (생략)	제51조(손실의 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u>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u>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 ----- ----- <u>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u> ----- ----- -----
제52조(시·군의 경비부담)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수리, 활용 또는 <u>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u>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시·군의 경비부담) ----- ----- ----- ----- <u>기록작성 등에 필요한</u> ----- -----
제56조(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예능의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을 공개할 경우에	<u><삭 제></u>

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표창) (생략) 1. ~ 2. (생략)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명예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 6. (생략)	제62조(표창)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3. <삭 제></u> 4. ~ 6. (현행과 같음)